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2월 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12월 21일

제1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사업별 예산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(안 별표2)
 - 기한연장 : 2007. 12. 31 → 2008. 12. 31까지
 - 한시정원 : 2명 (7급1명, 8급1명)

라. 참고사항

- 경북도 정책기획관 - 213(2007. 1. 5)호의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별예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 등 2명의 한시정원 인력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. 12. 31에서 2008. 12. 31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임
-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